

뉴욕시에서 일할 때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두세요!

여러분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

-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합의된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.
- NYC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.
- 차별, 성희롱, 학대,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.
- 직장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 및 교육을 받을 권리.
-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권리.
-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관공서, 이민자 및 노동 인권 단체, 노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.
- 14 세에서 17 세의 미성년자가 근로할 때는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.

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(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, DCWP) 웹사이트(www.nyc.gov/dca)를 방문하여 "근로자(Workers)"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NYC 근로자 권리장전(Workers' Bill of Rights)을 한국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.



노동 착취 및 인신 매매의 잠재적 징후

NYC 에서 여러분의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

-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.
- 급여를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.
- 여러분의 신분증, 여권, 여행 서류를 관리하는 행위.
-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등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행위.
- 일하지 않으면 ICE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.
-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.
-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.
-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.
-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행위.
- 특히 하루의 근무를 마친 후에 근무지에서 이동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.
- 여러분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격리 또는 감금하는 행위.

고용주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뉴욕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도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**1-800-621-4673** 으로 전화하거나 www.nyc.gov/NYCHOP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